

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기준

1.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

-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(제53조제1항*),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음

*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

- 그러나 자연재해,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

-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(사후승인 가능)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

2.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

가. 자연재해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,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

- 법 제53조제4항 ‘특별한 사정’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면서, 시행규칙 제9조에 ①자연재해와 ②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, ③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세부 규정

- ① 자연재해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 가목의 태풍, 홍수, 지진 등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-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: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함
- ③ 이에 준하는 사고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

나.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

-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사전에 '인가'를 받아야 함(원칙)
 -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'승인'을 받아야 함(예외)

다. 근로자의 동의

-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'근로자 동의서'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아야함(원칙)
 - 다만,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신청서와 함께 첨부 가능(예외)

3. 인가(승인) 대상 판단 기준 및 사례

'자연재해,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,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'에 해당하는지 여부

가. 판단기준

- ①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였고, ②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, ③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 및 승인 가능
 -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

나. 인정되는 사례 예시

㉠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

- 폭설·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경우

* 예시: 폭설에 의한 제설, 폭우로 인한 붕괴 예방활동 및 수습 등

○ 감염병,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,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

* 예시: AI·구제역 발생시 통제 및 방역활동, 메르스 등의 감염병에 따른 통제 등

○ 화재, 폭발,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

* 예시: 화재 진화 및 복구,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등

○ 방송·통신 기능 마비 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복구

* 예시: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방송재난 긴급대처 및 장애복구,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,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. 단, 방송·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일반적·일상적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

○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/ 도로 범람 등의 수습

○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 복구

* 예시: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장애 발생, 사이버 공격, 금융·의료정보·기간 산업·국방시스템 등의 장애 발생

○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동

② 재난 등 사고발생이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는 경우도 포함

○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, 구조활동 등

* 예시: 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의 피항, 인명 대피 및 구조 등

○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활동 및 백신 공급

○ 지진, 폭설·폭우 등의 자연재난, 민방공 경보,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

- 신속·정확한 상황 전파 및 대피안내, 재난확산방지를 위한 방송

○ 해외 현장의 내전 등으로 인한 긴급 보호 조치 및 대피



○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·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

- 국가기관(국정원)의 국가 사이버 경고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는 국가정보시스템의 긴급장애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므로 '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'의 수습에 해당

- 다만, 일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 '주의'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

* DDos 공격,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, 北 핵실험 등

<참고>

<사이버위기 경보단계별 상황>	
	<p>경보단계 [심각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 -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발생 -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 필요
	<p>경보단계 [경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ISP)망-기간망의 장애 또는 마비 -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- 다수 기관의 공조 대응 필요
	<p>경보단계 [주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- 침해사고가 일부 기관에서 발생 했거나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-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보안태세 강화 필요
	<p>경보단계 [관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워·바이러스, 해킹기법 등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 증가 -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우려 -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활동 강화 필요
정상단계	
	<p>경보단계 [정상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 분야 정상적인 활동 - 위험도 낮음 워·바이러스 발생 - 위험도 낮은 해킹기법·보안취약점 발표

《근로기준법》

◆ 근로기준법 제53조

-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.

◆ 시행규칙 제9조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)

- ①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-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.

《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》

◆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 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